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1나35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최영식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김지환, 김태영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6. 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505677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03,306,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3,306,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주식회사 F,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 및 ② 피보험자 주식회사 G,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0. 12.부터 2017. 10. 16.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D는 E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2017. 2. 20. 3,000만 원, 같은 해 4. 21. 4,950만 원 합계 7,950만 원을 지급한 후 E와 D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101)를 제기하였고, 2017. 8. 23. 위 법원으로부터 “E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55,88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2.부터 2017. 6. 23.까지 연 12%의, 4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2.부터 2017. 6. 23.까지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D에 대한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D의 부동산 취득경위

1) O는 2015.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경기 양평군 P, R, S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낙찰 받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 T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O의 아들인 U(이 사건 계쟁부동산과 관련된 O 명의의 법률행위는 대부분 U이 대리하였다)은 T와 사이에, T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다만, 당시 T는 신용 문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매수인으로 V, 피고 C, M을 물색하였고, U와 사이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M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M도 신용 문제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M의 조카인 D 명의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이에 O와 D는 2016. 6. 27.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D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는 2016. 7. 27. H조합 강남지점에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담보로 2억 7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 전부를 이 사건 계쟁부동산 매매대금 및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4) 이에 따라 2016. 7. 27.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한편, 채권최고액 248,4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

5) M은 D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으로 2016. 10. 19., 같은 해 11. 28., 및 같은 해 12. 26. 각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M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9. 6. M이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 명의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2고약2175).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계쟁부동산 소유권 취득 과정

1) M은 2016. 11. 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17.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한편, 2016. 12. 30.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피고 B는 2017. 10. 27.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7.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아가 피고 C은 2019. 4. 2.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1. 22. 같은 달 1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 외에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가 있었다. 위 빌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빌라는 140,6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8. 12. 19.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금액은 합계 172,971,346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10, 11,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의 증언,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가 2016. 10.경 이 사건 보증보험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T인데, T는 O와 합의하여 M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매수인을 M으로

하기로 한 사실, ② 그런데 M이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자신의 조카인 D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B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매월 D에게 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는 M을 대리하여 O와 사이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O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M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M은 단지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D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어서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D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덧붙여, 비록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M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D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권가희, 판사 곽새롬

별지

목 록

1. 경기 양평군 P 대 581㎡
2. 경기 양평군 P 지상

Q단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80.22㎡

2층 53.97㎡, 끝.

